

□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

연번	관련기관	지적내용	처분요구				비고
			처분 종류	신분상 조치	재정상 조치		
					종류	금액(천원)	
1	서울시설공단	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등 부적정	주의요구	-	-	-	

# 감사위원회

## 주의요구

**제 목** 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 등 부적정

**관 계 기 관** 서울시설공단

**내 용**

서울시설공단에서는 예산운용계획1)에 따라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을 편성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.

### 1. 실비성 장려금의 총인건비 미반영

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 및 「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는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총인건비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.

또한 위 지침에 따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예산 과목 중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편성하여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해당 장려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2019년 기준〔붙임〕“부서별 실비성 장려금” 45개 항목 중 4개 항목2)을 제외한 ○○○○○경비 등 41개 항목의 실비성 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총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실비성 장려

1) 예산운용계획 붙임 : 부서별 실비성 장려금

2)○○○본부·○○실·○○○○○실-\*\*\*\*\*금, ○○○○차-\*\*\*\* \*\*비, ○○○○○차-\*\*\*\* \*\*비, \*\*\*\*\*비

